

보 건 복 지 부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수당 지급업무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¹⁸⁸⁾에게는 장애수당¹⁸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주시 등 8개 시·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 29명의 장애인에게 1~44개월간 9,12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장애수당 미지급 현황(2016년 8월 기준)

(단위 : 명, 원)

시/군	합계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시설)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29	9,120,000	18	6,380,000	11	2,740,000	
원주시	7	2,420,000	3	880,000	4	1,540,000	
삼척시	1	40,000	1	40,000	-	-	

188) 등록 장애인 중 3~6급 장애인(3급의 중복장애인은 제외)

189) 장애수당(기초): 2013~2014(3만원/월), 2015~2016(4만원/월) / 장애수당(시설): 2013~2016(2만원/월)

시/군	합계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시설)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횡성군	6	2,300,000	3	1,360,000	3	940,000	
평창군	5	2,540,000	4	2,460,000	1	80,000	
정선군	3	520,000	3	520,000	-	-	
철원군	3	700,000	1	560,000	2	140,000	
화천군	1	40,000	1	40,000	-	-	
양구군	3	560,000	2	520,000	1	40,000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42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장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4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30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2,54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52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70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4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구군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장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장애수당 560,000원을 추가 지급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수당 지원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